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8. 27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버스정책과	담 당 자	· 버스정책과장 장구중, 사무관 박송이, 주무관 문병선 · ☎ (044) 201-3823, 3832, 3827
보 도 일 시		2021년 8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업계 지원.. 차량 운행연한 연장 - 전세버스(2년) · 특수여객차량(장레차)(6개월) 운행연한 연장 -

-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(장레차)은 차량의 운행연한(차령)이 현행보다 각 2년,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코로나-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\*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8.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  - \* 연간 운행거리: 시내버스(9.7만km), 시외버스(19.8만km), 고속버스(23.3만km), 전세버스(4.8만km)
- 최근 코로나-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, 차량 대폐차\*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
  - \* 대폐차(代廢車) :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령이 만료된 차량(전세버스 대폐차현황 : '18년 5,663대, '19년 6,996대, '20년 4,568대)
-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.5만대, 특수여객 2.6천대로 추산되며,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, 특수여객차량인 장레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.

< 개정 전후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 차령 비교(버스 기준) >

		기본차령	연장가능기간*	비 고**
전세	종 전	9년	2년	11년간 사용 가능
	개 선	9년 + 2년	2년	13년간 사용 가능
특수	종 전	10년 6개월	2년	12년 6개월간 사용 가능
	개 선	10년 6개월+ 6개월	2년	13년간 사용 가능

\*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

-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(2020.9.1. 시행)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(2년)에서 1년 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.
- 한편,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코로나-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”면서,
  - “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# 참 고

##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요약

### 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2]

####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(제40조제1항 관련)

##### 1. 차령

차 종	사 업 의 구 분		차 령
승용자동차	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	개인택시(경형·소형)	5년
		개인택시(배기량 2,400cc 미만)	7년
		개인택시(배기량 2,400cc 이상)	9년
		개인택시[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,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(이하 이 호에서 "환경친화적자동차"라 한다)]	9년
		일반택시(경형·소형)	3년 6개월
		일반택시(배기량 2,400cc 미만)	4년
		일반택시(배기량 2,400cc 이상)	6년
		일반택시(환경친화적자동차)	6년
	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	경형·소형·중형	5년
		대형	8년
	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	경형·소형·중형	6년
		대형	10년
	플랫폼운송사업용	배기량 2,400cc 미만	4년
배기량 2,400cc 이상		6년	
환경친화적자동차		6년	
승합자동차	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		11년
	그 밖의 사업용		9년

##### 2. 차령 연장요건

가.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(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기간에 받아야 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